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주요 내용

I. 서 론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 노후소득대책 마련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은퇴기간의 확대 및 근속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노후준비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
- 이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 방안의 종합적 모색을 위해, 본 연구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소비행태를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다루고 있음.
 - 즉, 근로자의 소비행태를 통해 적정소득대체율을 추정함과 더불어, 최근의 노동여건 및 연금제도 하에서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방안을 모색

II. 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효과 분석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 근로자들이 은퇴 전 소득과 대비하여 은퇴 후에 적절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적정소득대체율)과 사적연금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효과(실질소득대체율)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함
 - 첫째, 일반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수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개념을 노후소득 보장수준 지표로 설정
 - 이를 위해 노동패널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가구소비함수를 이용하여, 은퇴 이전의 소득 수준 대비 은퇴 이후의 소비 수준의 비율을 이용하여 적정 소득대체율을 산출

- 둘째, 실질 소득대체율은 현재 근로여건 및 연금제도 등을 감안할 때 표준 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시현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로 보고, 은퇴 후 생활이 연금소득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셋째, 실질소득대체율은 구체적으로 노동패널상의 평균소득계층이 근로기간 동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은퇴이후의 예상소득을 기초로 산출함
 - 퇴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연간 임금 총액의 8.33%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근로기간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30년, 35년, 40년으로 구분함
 - 개인연금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가입한다고 가정한 후, 가입기간(30년, 35년, 40년)에 따라 은퇴 이후부터 사망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하게 되는 연금액과 은퇴이전의 소득수준을 비교·분석함

2. 분석모형의 설정

가. 적정소득대체율 산출모형

- ☐ 적정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해 은퇴 후 가구소비 예측치와 은퇴 전 가구소득과의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소비함수를 설정하기로 함
- 즉, 은퇴이후 가구 소비 예측을 위해 평생소득가설을 기초로 가구 소비함수를 경제적 능력변수와 가구특성의 함수로 표현하였으며, 가구특성벡터에는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유무, 주택소유여부, 은퇴여부 등이 포함
- 또한, 서로 다른 가구 규모 사이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를 이용하여 소비함수를 설정

나. 적정소득대체율 산출모형

- ☐ 근로기간 중 연금가입을 통한 은퇴기간 동안의 연금수급액을 산출을 위해 생애보험료 산출 모형을 설정하여 은퇴시점의 연금 자산 규모를 추정

- 생애보험료 산출모형에서 은퇴시점의 연금자산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연령, 가입기간, 은퇴기간,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요구됨.
- 이에 따라, 평균 은퇴연령은 58세로, 은퇴기간은 통계청의 기대여명 자료를 토대로 58세의 평균 기대여명 24.6년을 적용하였으며,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실질 투자수익률은 운용수익률 비교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1.54%, 2.10%를 적용함.

3. 분석대상 및 분석데이터

- 개별가구 특성을 반영한 적정소득대체율 추정을 위해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9차년도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실질소득대체율 산출 과정에서는 노동부의 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 통계청의 생명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공시자료 등이 이용됨

4. 노후소득보장 효과 결과 분석

가. 적정소득대체율 산출결과

-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계소비함수식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게 되면 가구주 연령, 가구주연령의 제곱, 교육수준, 소득이 가구소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침.
- 또한, 더미변수로 사용된 은퇴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음의 부호를 가지며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은퇴자 가구의 소비수준이 비은퇴자 가구의 소비수준 보다 더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계소비함수를 이용하여 가구소비의 추정치를 구한 후, 동일 가구의 은퇴 전·후의 소비비율을 통해 산출된 적정 소득대체율은 61.5 ~ 64.9%에 이름.

적정소득대체율 산출결과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가구규모 미고려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1.0428	0.3918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495	0.3624
가구규모 고려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0.9813	0.4024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147	0.4178

나. 실질소득대체율 산출결과

- 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된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5.8 ~ 20.0%에 불과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6.3~7.5%로 나타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의 경우 9.4~12.5%인 것으로 나타남.

실질소득대체율 산출결과

(단위 : %)

25년 가입		30년 가입		35년 가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6.3	9.4	7.0	11.0	7.5	12.5
15.8		18.0		20.0	

5. 분석상의 시사점

- 적정 소득대체율 산출결과 64.9%로 나타나고 있으나, 근로기간 3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55%에 그침
- 표준소득근로자가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실질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 30년, 35년 기준으로 각각 18%, 20%로 나타남
- 특히, 공사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효과는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 (70~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

3층 개인연금	10 ~ 20%		개인연금	7.5%
2층 퇴직연금	30%		퇴직연금	12.5%
1층 공적연금	30%		국민연금	35%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권고안: 70 ~ 80%

우리나라의 실질소득대체율: 55%

Ⅲ.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방안 및 향후과제

1.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의 기본방향

- ☐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이 목표 소득대체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 제고가 필요
- ☐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 고용구조 등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구조적(시스템적) 또는 부분적(파라메타적) 측면에서의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즉, 연금제도 전체의 틀을 제시하는 구조적 연금 개선을 통해 사적연금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적연금 자체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적 연금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2.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

가. 퇴직연금제도

-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정 퇴직금 제도의 장점을 완화하여 가되, 장기적으로 법정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퇴직연금제도 혜택의 미흡, 퇴직급여 충당금 손비한도의 과도한 인정 등으로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시스템 작용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연금세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발전 차원에서 현행 양적규제의 적립금 운용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나. 개인연금제도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요구되므로, 개인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개인연금제도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 계층 보다 낮은 소득계층의 연금가입 유도를 위한 소득공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함하며,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사람들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서 요구하는 연금가입 기간 충족시 개인의 납부금액에 비례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 등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 검토가 요구됨.

3.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안

가. 역할분담모형 설정의 제가정

- 공사연금 간 역할 분담체계 모색을 위한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의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
-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의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연평균 증가율 3.81%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은퇴이후 최저생계비액을 추정
-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은퇴 전 소득은 은퇴직전 근로소득과 은퇴직전 3년 평균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표준가구의 은퇴 전 근로소득 대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비율로 정의
-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3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은퇴직전 근로소득 기준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1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퇴직전 3년 평균 근로소득 기준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21%로 나타남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 결과

구 분	30년	35년	40년
은퇴직전 근로소득기준(A)	18.4%	19.0%	19.7%
은퇴직전 3년평균 근로소득기준 (B)	20.0%	21.0%	22.0%
평균 소득대체율	19.2%	20.0%	20.9%

나. 역할분담 모형의 설계 및 특징

- ☐ 우리나라에 고려될 수 있는 공사연금 역할 분담체계는 공적연금 우위형, 공사연금 조화형 보다는 사적연금의 공적연금 대체형이 바람직하나 여러 현실적 제약이 존재
 - 공사연금 역할 분담모형의 설계시 소득비례부분의 법정 완전대체형 등과 같은 공적연금 민영화 방안 추진에 따른 제약 및 적용제외형 적용의 한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경우, 적용제외 방안과 민영화 방안을 절충한 역할 분담모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부분적 민영화 모형으로 공적연금에 기초한 기초소득보장과 사적연금방식으로 소득비례부분을 운용하는 모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 연금가입기간 3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소득대체율 65%와 연금제도에 의해 실현 가능한 실질 소득대체율 55%의 차이를 고려한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공사연금 간의 역할분담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20%,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소득대체율 15%,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2.5%, 개인연금 부분의 소득대체율 7.5%+a 등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모형 설계(안)

역할분담 전		역할분담 후	
개인연금	7.5%	개인연금 (7.5%+α)	α % 7.5%
퇴직연금	12.5%	퇴직 + 소득 (37.5%)	22.5% (퇴직연금) 15%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
국민연금	35%	기초연금 (20%)	20% (기초연금)

실질(예상) 소득대체율 : 55% 목표(적정) 소득대체율 : 65%

다 역할분담 모형의 운용체계

- 공적연금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여 소득 재분배 부분은 공적연금제도로 계속 운용하되, 소득비례 부분은 퇴직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한 후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 소득재분배 부분은 소득대체율 20% 수준의 확정급여형 기초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소득대체율 20%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기초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하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득비례부분 15%는 퇴직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한 후 완전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 또는 명목확정기여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공사연금 역할 분담시,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3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대체율을 12.5%에서 22.5%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적 장치에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사전에 확보될 필요성이 있음
- 공사연금 역할 분담에 따른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운용수익률 제고 및, 노후대비를 위한 근로자 추가납입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는 역할 분담 전 가정한 운용수익률을 4.77%에

서 6.85%로 제고 시키거나, 역할 분담 전에 비해 근로자 보험료 기여율을 6.71% 만큼 추가 납입할 필요성이 있음.

역할분담 전후의 운용수익률 및 연금가입액 추정

	운용수익률 부분		연금가입액 부분	
	역할분담 전	역할분담 후	역할분담 전	역할분담 후
퇴직연금	4.77%	6.85%	보험료 기여율 8.33% (임금의 1/12)	보험료 기여율 8.33% + 6.71% (근로자추가납)
개인연금	5.33%	5.33% + α	20만원	20만원+α

주 : 운용수익률은 명목투자수익률 기준임

4.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를 위한 과제

- ☐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요구됨.
 - 첫째, 고령사회의 도래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후 정부, 기업, 개인 차원에서 고령화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됨.
 - 둘째,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설정한 후 공사연금간 역할 분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VI. 결론

- ☐ 인구고령화에 낮은 노동시장참여율, 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OECD 주요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 ☐ 우리나라 또한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여 고령화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연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는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연금제도의 파라미터적 개선과 더불어 시스템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